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75 발의연월일: 2022. 9. 27

발 의 자: 박영순·김윤덕·김정호

박 정·장철민·전해철

정태호 · 조정식 · 홍영표

황운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급작스런 집중 호우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산사태 및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조기 경보 및 대피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.

현행법은 지자체장 등이 재난사고 발생 시 '대피안내'나 '권고'뿐만 아니라 '대피명령'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, 대피명령에 따른 주민 불편과 반발 등 부작용 및 책임소재의 문제 때문에 지자체가 대피명령에 소극적인 상황임.

이에 재난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대피명령을 내리도록 하고자 함(안제40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1항 전단 중 "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" 를 "재난 발생으로"로, "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"을 "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"로, "명할 수 있다"를 "명해야 한다"로 한다.

제64조제1항 중 "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"를 "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, 제40조 및 제45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대피명령) ① 시장・군수	제40조(대피명령) ①
•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(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	
는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	
조에서 같다)은 <u>재난이 발생하</u>	<u>재난 발생으로</u> -
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	
<u>에</u>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	
산에 대한 <u>위해를 방지하기 위</u>	위해의 우려가 있는
<u>하여 필요하면</u> 해당 지역 주민	<u>경우</u>
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	
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	
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 • 관리자	
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	
<u>명할 수 있다</u> . 이 경우 미리 대	<u>명해야 한다</u>
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4조(손실보상)① <u>국가나 지방</u>	제64조(손실보상)① <u>국가나 지방</u>
자치단체는 제39조 및 제45조	자치단체는 제39조, 제40조 및
(제46조에 따라 시·도지사가 행	제45조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	
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	
보상하여야 한다.	
②~④ (생 략)	②~④ (현행과 같음)